



# 의견서

사 건 2021헌마74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2021. 12. 28.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최지연

헌법재판소 귀중

< 목 차 >

I.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가명정보’ 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대하여 ..... 3

1. 이해관계인 의견의 요지 ..... 3

2. 청구인의 답변 ..... 4

    가. 이 사건 법률의 문언적 해석 ..... 4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 ..... 6

    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상의 ‘가명정보’ 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 8

        (1) 예외 없이 정보실명화를 금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보호를 불가능케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규제가 충분히 가능 ..... 9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13

1. 이해관계인 의견의 요지 ..... 13

2. 청구인의 답변 ..... 13

    가. 재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규제 마련 가능 ..... 13

    나. 재식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피해자인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 절차 부존재 ..... 15

III. 결론 ..... 18

# 의견서

사    건    2021헌마74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이해관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I.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대하여

## 1. 이해관계인 의견의 요지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1) 이해관계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들의 입법 배경과 취지를 이에 대한 근거로 들며 합헌적 법률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1)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4면, 14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가명정보’가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닌 ‘가명정보’ 전체를 지칭하고 있고, 설령 이해관계인의 해석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변합니다.

## 2. 청구인의 답변

### 가. 이 사건 법률의 문언적 해석

이해관계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심판대상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을 구성하는 개별 조항 전부가 과학적 연구 등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재식별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sup>3)</sup>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의 특례가 규율하는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되는 가명정보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sup>4)</sup>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정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sup>5)</sup> 동조 제1

2)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6면

3)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3면

4)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5면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의2호는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명정보’와 ‘가명처리’가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되는 가명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되는 가명정보는 가명정보에 속하는 부분집합임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조항들은 이해관계인이 언급하는 제3장 제3절의 특례규정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치한 제3장 제3절의 특례규정만 가명정보를 지칭할 시 과학적 연구 등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를 의미하고자 한 것이라고 특별히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개별 규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하는 규정입니다.<sup>6)</sup>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위 세 가지 경우를 특별히 수식하지 않고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과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의 특례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으로 규율하는 조항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과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내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보 보호법 제3장 제3절 내 특례조항을 모두 살펴보면 제28조의2와 제28조의3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고,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7은 그러한 수식어를 동반하지 않고 ‘가명정보’ 전반을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3절 내 모든 규정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에 해당한다는 이해관계인의 해석은 법률의 문언과 상이한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헌재 1990. 4. 2. 89헌가113)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장<sup>8)</sup>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되는 가명정보’로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언 상으로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이라는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됩니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가

7)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6면

8)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5면

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sup>9)</sup>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sup>10)</sup>

개인정보보호법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제75조(과태료)

9)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1 등.

10)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경우 위반 시 위의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과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되는 가명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과 그 해석이 상이한 경우 명확성의 원칙 위반의 해악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 심판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함을 확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상의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설령 이해관계인의 해석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소정의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그 반대해석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



다.

(1) 예외 없이 정보실명화를 금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보호를 불가능케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규제가 충분히 가능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되는 가명정보를 추가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식별화하여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악용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sup>11)</sup> 이로 인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되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식별화를 금지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법 제20조(제3자수집통지권), 21조(파기권), 27조(영업양도통지권), 34조1항(유출통지권), 39조의3(이용동의권), 39조의4(특례유출통지권), 39조의6(특례파기권), 39조의7(특례동의철회권), 39조의8(특레이용내역통지권)의 권리 및 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의 제35조에서 제37조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사이의 어떠한 권리도(이하, “정보주체의 권리 등”) 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sup>12)</sup> 이 권리들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지정하여 열람, 처리정지 등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식별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제28조의7은 위와 같이 배제되는 권리들을 열거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11)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25면

1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권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보호법 -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개인정보보호법(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 35조, 36조, 37조	개인정보보호법 20조, 21조, 27조, 34조, 39조의4, 39조의6, 39조의8

심판대상조항의 '가명정보'가 이해관계인의 주장대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가명처리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달리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보호와 가명정보 악용 방지라는 이익 중에서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의 길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하 "GDPR"이라고 합니다)은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하는 비회원국에도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DPR은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작성'을 위해 처리된 정보라고 해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그 권리들을 인정하고 각각의 구성국들이 자신들의 국내 상황에 따라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배제하는 규정을 만드는 때에도 반드시 권리의 행사가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작성"의 목적 달성에 중대하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sup>13)</sup> 이에 비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해관계인의 주장대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가명처리된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런 목적으로 처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보들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GDPR은 열람권(15조), 정정권(16조), 삭제권(17조), 처리제한권(18조),

13) 김희성. (2021). 가명정보의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법학논총, 45(1), 37-66.

정정 삭제 처리제한에 대한 제3자 제공대상 통지권 (19조), 정보이동권(20조), 처리정지권(21조) 만을 배제할 뿐이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제34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통지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르면 이 통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명정보도 당연히 유출이 될 수 있고 특히 재식별키와 같이 유출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받을 수 없고 대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GDPR은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작성을 위해 처리된 정보임에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감독기관과 개인정보주체에게 모두 개인정보 침해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가급적 이를 알게 된 후 72시간 내에 감독기관에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를 통지해야 합니다.<sup>14)</sup>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sup>15)</sup>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침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10,000,000유로에 이르는 행정 과태료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2%에 이르는 행정과태료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습니다.<sup>16)</sup> 중요한 점은 GDPR은 정보주체들이 위의 침해통지를 온전히 받게 되지만 심판대상조항 하에서는 그와 같은 침해통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 단,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2시간 내에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사유를 동봉해야 합니다(GDPR 33.1.).

15) GDPR 34.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기술 및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조치, 특히 암호처리 등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이해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가 침해로 영향을 받은 개인정보에 적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GDPR 34.3. (a)).

16) GDPR 83.4



이외에도 GDPR은 법 제20조(제3자수집통지권), 21조(과기권), 27조(영업양도 통지권), 39조의4(유출통지권), 39조의6(과기권), 39조의8(이용내역통지권)등에 해당하는 권리들도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작성을 위해 처리된 정보라도 배제를 하지 않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배제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화를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은 과잉한 것입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처리기술의 시대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를 100% 방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명정보 재식별 사태에 대해 정보주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주장대로 심판대상 조항들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여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1. 이해관계인 의견의 요지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어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up>17)</sup> 이해관계인은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청구인의 답변

가. 재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규제 마련 가능

이해관계인은 “법 제28조의5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7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의 재식별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sup>18)</sup>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

17)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5면, 18면

18)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2면

로 가명화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기로 하는 모순적 주장입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가명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행사를 불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달리 정보주체가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행사를 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GDPR 제11조 제2항은 개인정보주체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에게 열람권(제15조), 정정권(제16조), 삭제권 및 잊힐 권리(제17조), 처리제한권(제18조),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20조)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sup>19)</sup> 즉 가명정보라고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정보주체가 정보주체의 정보가 가명처리 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19) Article 11 Processing which does not require identification

1. If the purposes for which a controller processes personal data do not or do no longer require the identification of a data subject by the controller, the controller shall not be obliged to maintain, acquire or process additional informa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data subject for the sole purpose of complying with this Regulation.
2. Where,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troller is able to demonstrate that it is not in a position to identify the data subject, the controller shall inform the data subject accordingly, if possible. In such cases, Articles 15 to 20 shall not apply except where the data subject,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his or her rights under those articles,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enabling his or her identification.

제11조신원확인을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상 개인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요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할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유지, 취득, 처리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개인정보주체가 해당 조문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지원 센터 번역문)



상황입니다. 실제로 청구인이 2021. 3. 18. SK텔레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1) 가명처리 한 사실이 있는지, 2) 가명처리 했다면 가명정보의 항목 및 내용과 제3자 제공 여부, 3)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 처리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SK 텔레콤은 2021. 3. 30. “가명처리는 정보주체를 특정하여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정보가 포함 되어있는지를 당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명처리가 완료된 정보를 다시 재식별 시도를 하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37조)의 규정을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그 대상이 된 정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정보주체인 청구인의 정보가 가명처리 한 사실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참고자료 1. 2021. 3. 30.자 SK 텔레콤 회신 이메일).

#### 나. 재식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피해자인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절차 부존재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재식별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명처리는 특정한 개인정보주체와 연결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익명처리의 한 방법이 아니라 단지 개인정보주체와 처리정보 사이의 연결성을 줄이는 보안 조치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sup>20)</sup> 많은 정보가 누적될수록 정보 주체의 식별가능성이 커지고<sup>21)</sup>,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정보

20) 「익명처리기법에 관한 2014/05 의견서」(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0829/14/EN/WP216, adopted on 10 April 2014.

21)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루어진 넷플릭스 경연대회에서 넷플릭스 데이터와 영화정보사이트에 공개된 사용자 리뷰를 결합하여 일부 개인을 식별해 내어 대회가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김송옥,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법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공법연구 제49집 제 2호, 2020 참조

를 결합하는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가 가지고 있는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22)</sup> 가명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sup>23)</sup>하는 제재의 형식으로 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통해 재식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정보주체는 위와 같은 위반이 발생했는지 열람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위험을 느꼈을 때 정정 또는 삭제할 수도 없고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명정보 재식별 사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처리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택하면서 실질적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주체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견되었지만 정작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책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

4. 28.자 심의·의결<sup>24)</sup>은 피심인이 Github 공개 저장소에 연구성과 공유 목적

2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1-007-07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 4. 28. (참고자료 2.)



으로 모델과 함께 100건(1,431건의 대화문장)의 카카오톡 대화(이하 'Github 대화'라고 합니다)를 게시함으로써 2021. 1. 13. 이를 비공개 처리하기 전까지 Github 사이트에 접속한 누구나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가명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심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이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생성, 이용, 제공하는 등의 처리를 허용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공'에 관하여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한하는 취지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나 입수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Github에서 공유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처리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인 정보주체는 심판대상 제28조의5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심인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가 혹시 위의 Github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어 법 제35조의 열람권, 제36조의 정정삭제권, 제37조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피심인은 위의 SK텔레콤과 비슷한 답변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Ⅲ. 결 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화된 정보에만 적용된다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화된 정보에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과잉하게 침해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이와 같은 권리침해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완전히 포기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수단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화되지도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배제하는 이 사건 심판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자 료

1. 2021. 3. 30.자 SK 텔레콤 회신 이메일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1-007-072호

2021. 12. 28.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최 지 연

## 헌법재판소

## 귀 중



[SKT강북CV센터] [redacted] 고객님 문의 내용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redacted] 강북CV센터 [redacted]

2021년 3월 30일 오후 12:30

받는사람: [redacted]

안녕하세요

프라이버시센터에서 회신 메일이 도착하여 전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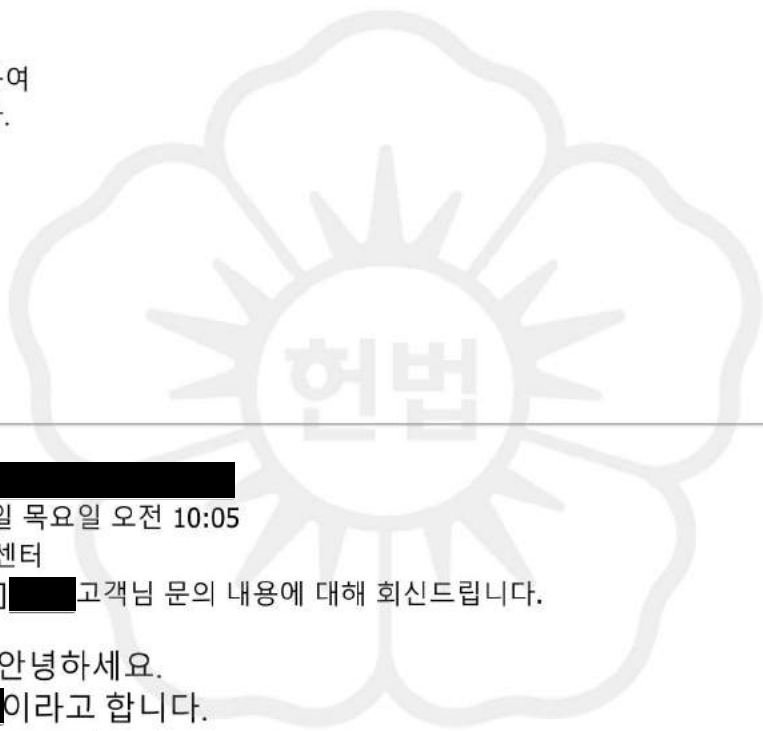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 추가 문의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 [redacted]

보낸 날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05

받는 사람: [redacted]/강북CV센터

제목: Re: [SKT강북CV센터] [redacted] 고객님 문의 내용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프라이버시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skt 이용자 [redacted]이라고 합니다.

- 가입자 번호: [redacted]

2021년 2월 5일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나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명처리한 경우 가명정보 항목 및 내용,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1)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2) 가명처리했다면 가명정보의 항목 및 내용과 제3자 제공 여부, 3)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열람하고 싶습니다.

- 가명처리는 정보주체를 특정하여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정보가 포함 되어있는지를 당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명처리가 완료된 정보를 다시 재식별 시도를 하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37조)의 규정을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그 대상이 된 정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또한 향후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귀 사 혹은 제3자의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여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심 의 · 의 결

안 건 번 호 제2021-007-07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스캐터랩

의결연월일 2021. 4. 28.



주 헌 법 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연애의 과학' 앱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라. '이루다' 개발 및 운영에 이용된 카카오톡 대화 정보 중 회원탈퇴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바. Github에서 공유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가.부터 사.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55,500,000원

나. 과태료 : 4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 등의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반현황과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주소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전체 매출액				
관련 매출액 (텍스트앳)				
관련 매출액 (연애의 과학)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스캐터랩(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이 개발한 AI 챗봇 ‘이루다’가 피심인의 앱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는 언론보도<sup>1)</sup>와 관련하여, 2021. 1. 12.부터 2021. 3. 25.까지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013. 2. 1.부터 2021. 1. 31.까지 ‘텍스트앳’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16. 5. 9.부터 2021. 1. 31.까지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피심인은 2020. 12. 22. 페이스북 기반의 AI 챗봇 ‘이루다’를 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21. 1. 12.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나.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내 개인정보 처리

1) 쿼에 익은 AI 말투, 알고보니 카톡 도용(한국경제, ‘21.1.11.)

## 1) 개인정보 수집 방법

피심인은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 이용자로부터 각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거쳐 수집한 회원정보를 각 서비스 DB에 저장하고 있다.

① '텍스트앳'은 이용자가 로그인아이디(이메일 주소), 닉네임, 성별, 직업(초중고/대학생/일반인 중 하나)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회원번호(자체 부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안내사항에 대한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텍스트앳'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가입시 안내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팝업을 통해 전문을 볼 수 있고 이 밖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절차나 다른 안내사항은 없다.

② '연애의 과학' 버전 1.0(2016. 11. 22.부터 2019. 4. 14.까지 서비스한 '연애의 과학' 앱)은 이용자가 로그인아이디(이메일 주소, 카카오톡·페이스북·애플 식별자 중 하나), 닉네임, 성별,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회원번호(자체 부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안내사항에 대한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 버전 1.0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가입시 안내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팝업을 통해 전문을 볼 수 있고 이 밖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절차나 다른 안내사항은 없다.

③ '연애의 과학' 버전 2.0(2019. 4. 15.부터 서비스한 '연애의 과학' 앱)은 이용

자에게 ‘로그인함으로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이용자가 ‘이메일로 가입/로그인’이나 소셜로그인을 선택하는 경우 로그인 아이디(이메일 주소, 카카오톡·페이스북·애플 식별자 중 하나), 닉네임, 관심 성별, 관심 연령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번호(자체 부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 버전 2.0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내사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팝업을 통해 전문을 볼 수 있고 이 밖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절차나 다른 안내사항은 없다.

##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① 피심인은 ‘텍스트앳’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직업을 초중고/대학생/일반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면서, 이용자가 직업을 초중고로 설정하거나 회원가입 후 저장된 직업을 초중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텍스트앳’ 이용자 중 직업을 초중고로 입력한 이용자는 2021. 1. 27. 기준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직업을 초중고로 입력한 이용자 숫자에는 만 14세 미만인 자와 만 14세 이상인 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수치로는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루다’와 ‘연애의 과학’의 전체 이용자 대비 만 14세 미만 아동 비율의 평균 수치인 %를 적용하여 ‘텍스트앳’ 전체 이용자의 %인 명이 만 14세 미만 아동 이용자 숫자 최대치로 추정된다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피심인은 ‘연애의 과학’ 버전 1.0에서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출생연도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회원가입 이후 ‘프로필 수정’에서 출생연도를 만 14세 미만으로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③ 피심인은 ‘연애의 과학’ 버전 2.0에서 이용자의 ‘관심을 두고 있는 연령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심연령으로 설정한 연령은 회원가입 이후에는 프로필에 이용자의 연령으로 표시되고, ‘프로필 수정’에서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 피심인은 출생연도나 프로필상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피심인은 ‘연애의 과학’ 버전 1.0과 버전 2.0을 통해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숫자를 최초           명이라고 제출하였으나, 해당 이용자 숫자에 생일이 지난 만 14세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관심연령이 실제 나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 14세 미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용자는           명이며 전체의 %에 해당한다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앱마켓의 이용 나이 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텍스트앳	만4세 이상	만 3세 이상	-
연애의 과학	만17세 이상	만 12세 이상	19 이용등급

### 3) 민감정보의 수집

피심인은 ‘연애의 과학’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심리분석 서비스와 별개로 성 관련 심리테스트를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중 “내 애인의 섹스 판타지” 테스트는 이용자가 섹스 장소나 행위와 관련된 143개 설문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섹스 판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테스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해당 심리테스트는 2018. 8. 22. 출시되어 2021. 1. 26.까지 이용하였으며, 이용자의 응답 결과는 ‘연애의 과학’ 서비스 DB에 저장되고 있다. 저장된 응답 결과는 다른 테스트를 기획하거나 AI 학습 등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용자가 설문 결과를 삭제하기 전까지 DB에 보관되고 있다.

[ ‘내 애인의 섹스 판타지’ 설문 문항 예시 ]



#### 4) 회원탈퇴한 자의 개인정보 미파기

피심인은 ‘텍스트앳’ 및 ‘연애의 과학’ 서비스 DB에 저장된 이용자 중 약 60만 명의 회원정보 일부와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94억건을 서비스 DB와 별도의 DB (이하 ‘학습 DB’라 한다)에 저장하였다.

피심인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이용자가 해당 앱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각 서비스 DB에서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카카오톡 대화파일을 모두 파기하였으나, 학습 DB에 저장된 일부 회원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문장은 파기하지 않았다.

## 5)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 미파기

피심인은 '텍스트앳'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미사용자 명과 '연애의 과학'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미사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한 사실이 없다.

### 다. '이루다' 관련 개인정보 처리

####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피심인은 페이스북 기반의 AI 챗봇인 '이루다' 서비스를 페이스북 회원만을 대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용자가 '이루다' 챗봇을 이용할 때 페이스북 가입절차와 별도로 이름, 나이, 성별 등을 입력하도록 하면서 이용자가 나이를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루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피심인은 나이 입력란에 14세 미만의 숫자를 기재한 이용자는 명에 달하나, 입력란에 생년을 기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임의의 숫자를 입력한 사례 등을 제외하면 '이루다' 전체 이용자의 %인 명이 만 14세 미만 아동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 2) '이루다' 개발 및 운영 시 개인정보 이용

##### 가) 카카오톡 대화의 수집

피심인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심리분석 서





텍스트넷			
연애의 과학			
합계			

#### 다) '이루다'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피심인은 2020. 2.부터 2020. 12.까지 학습 DB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94억건을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시켜 '이루다' 모델을 개발하였다. 피심인은 학습 DB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루다'와 같은 기계학습 모델을 도출하는데 사용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이름을 <NAME>으로 치환하고 숫자가 학습에 필요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NUM>으로 치환하여 학습시켰으나, '이루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이름과 숫자 등을 치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학습시켰다.

#### 라) '이루다'의 응답 DB 구축

피심인은 '이루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이루다' 모델이 특정한 응답후보군 문장 중에 가장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이루다'의 응답 DB 약 1억 건(                    건)을 구축하였다. 응답 DB는 학습 DB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94억건 중 20대 여성이 발화한                    대화문장을 추출한 후, 2020. 2. 18.부터 2020. 12. 17.까지의 기간에 걸쳐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필터링 모델 등을 이용하여 실명, 장소명, 숫자/영문, 선정적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단어 등이 포함된 대화문장을 반복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 마) '이루다' 서비스 운영





아 있었다.

피심인이 Github에 공개로 게시한 자료는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없이 Github 사이트에 접속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2021. 1. 15. 기준, 다른 Github 이용자의 저장소에서 피심인이 업로드한 모델이 25회 공유되고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심인은 Github 측에 공개된 다른 이용자의 저장소의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를 요청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26.과 2021. 4. 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4. 9., 4. 14., 4.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내 개인정보 처리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3)</sup>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4)</sup>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2013. 2. 1. ~ 2021. 1. 31. ‘텍스트앳’에서 이용자 명의의 개인정보(성별, 이메일 주소, 직업, 비밀번호 등)를 수집하고, 2016. 5. 9. ~ 2021. 1. 31. ‘연애의 과학’에서 이용자 명의의 개인정보(성별,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 ID, 비밀번호, 연령 등)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안내사항에 체크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거나(‘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버전 1.0) 체크박스 없이 ‘로그인함으로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안내사항만을 보여주고 개인정보를 입력 완료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연애의 과학’

3) 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4)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버전 2.0)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클릭하는 경우 팝업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등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서비스 초기화면에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도록 안내하였을 뿐, 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형식적 동의가 일상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동의의 형식적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모순이며,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 없이 적법한 동의가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를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형식적 동의의 일상화를 우려하는 취지는 모호한 문구사용이나 의도된 형식화를 통한 면피성 개인정보 동의 취득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므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실질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이 같은 동의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동의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동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안내사항에 대해 체크박스만을 두고 있거나 체크박스조차 없이 하단의 작은 글씨로 ‘로그인함으로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고만 안내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형식화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언급한 판례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본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피심인은 과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가 적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제재규정이 없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 벌칙이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규정은 2020. 8. 5. 시행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통합 개정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등을 적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 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412쪽에도 해설되어 있다<sup>5)</sup>. 따라서 최소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시점인 2020. 8. 5.부터는 정보통

5)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412쪽 >

구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적용되는 일반규정	적용되는 특례규정	변화된 주요내용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4항, 제5항 ※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확인 특례	일반규정이 모두 적용되고,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확인의무는 특례규정 추가 적용

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심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 방식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2013. 2. 1. ~ 2021. 1. 27. ‘텍스트앳’에서 명의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2016. 5. 9. ~ 2021. 1. 27. ‘연애의 과학’에서 명의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

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 이용자가 앱 구입을 요청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원스토어는 19세 미만 이용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결여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수집 목적의 진위를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앱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앱스토어의 승인 기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면,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특별한 동의 방식을 요구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 및 제39조의15제1항제2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앱스토어의 기능과 상관없이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연애의 과학'에서 2018. 8. 22.부터 "내 애인의 섹스 판타지" 심리테스트를 통해 이용자        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수집하여 '연애의 과학' 서비스 DB에 저장함으로써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민감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동의 의사가 존재하고,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정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정보주체로 하여금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그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민감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

바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이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이 입력한 민감정보가 저장되는지, 수집·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보유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위험을 감안하여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주체의 민감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수집 등 처리할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법정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회원탈퇴한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텍스트넷’ 및 ‘연애의 과학’을 탈퇴한 이용자의 일부 회원정보

(SHA-256 해쉬함수로 암호화된 회원번호, 성별·나이·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학습 DB'에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므로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마.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텍스트앳' 이용자                   명, '연애의 과학' 이용자                   명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의 파기나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하였다.

## 2. '이루다' 관련 개인정보 처리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 1)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이루다’ 서비스를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2020. 12. 22. ~ 2021. 1. 12. ‘이루다’에서                    명의 만 14세 미만인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1. 나. 2) 위법성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앱스토어나 페이스북 등 기반 플랫폼 서비스의 기능과 상관없이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였다.

나.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개발·운영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한 행위

#### 1)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학습 DB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건을 2020. 2.부  
터 2020. 12.까지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시켜 ‘  
이루다’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 DB에서 20대 여성이 발화한 대화문  
장을 추출한 후 실명, 장소명, 숫자/영문, 선정적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단어 등이  
포함된 대화문장을 반복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다’의 응답 DB  
건을 구축하였으며, 2020. 12. 22. ‘이루다’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루다’ 모델이 응  
답 DB에서 가장 적절한 대화문장을 선택하여 발화하도록 운영하였다.

### 가) 개인정보 해당성

먼저, 피심인이 ‘이루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 약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한 행위와, 이루다 서비스 운영 시 약 1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응답 DB로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 ① 법원 판결

메신저 대화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2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5노1998 판결), 법원은 트위터 정보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와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각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개인의 일반적인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



호법」의 입법취지까지 고려하여 보면, 결국 트위터 정보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에는 해당 게시글 작성 시각, 작성자 닉네임, URL 정보, 게시글 제목 및 본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다음 아고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실명 확인이 필요한 포털사이트로서 그 회원들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닉네임 등의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더라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트위터 회원가입 시 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4가지만이 필요하고 실명을 기재할 필요도 없으므로 트위터 정보 전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실명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는 경우나 트윗 또는 리트윗 글이나 팔로워 및 팔로잉 내역 등 다른 트위터 정보와 결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트위터 아이디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트위터 정보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 ②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원 판결 및 피심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특징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 이용한 약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과, 이루다 서비스 운영 시 이용한 약 1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의 경우 실명인증된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메일 주소 또는 카카오톡·페이스북·Apple 식별자 중 하나와 닉네임, 성별, 출생연도를 수집하고 있으며(‘연애의 과학’ 버전 1.0 기준), 피심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는 트위터나 아고라와 같은 게시글 정보와 달리 양 당사자 간의 공개되지 않은 내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 안에도 실명과 실제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송금 완료 메시지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고, 학교, 전공, 학년, 휴대전화번호 등이 모두 한 대화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식별정보 외에 인간관계, 소속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대량의 대화를 통해서도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피심인이 구축한 학습 DB에는 회원정보 일부(SHA-256 해쉬함수로 일방향 암호화된 회원번호, 성별·나이·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문장만이 저장되어 있으나, ‘텍스트챗’이나 ‘연애의 과학’ 서비스 DB에는 수집한 모든 회원정보와 대화문장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이 회원번호를 다시 SHA-256 해쉬로 일방향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습 DB와 서비스 DB의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회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학습 DB 내 특정 대화문장을 서비스 DB 내 대화문장과 비교하는 경우 특정 대화문장을 발화한 이용자를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피심인이 구축한 응답 DB에 저장된 정보는 발화자에 대한 정보 없이 일반적인 대화문장 약 1억 건이 배열되어 있으나, 20대 여성의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고 상세주소 1건, 휴대전화번호 20여 건 등이 포함된 문장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대화문장을 피심인이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DB에서 검색하는 경우 발화자의 회원정보와 전체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루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 이용한 약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과 이루다 서비스 운영 시 이용한 약 1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나) 수집 목적 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2020. 2. 18. ~ 2021. 1. 12. ‘이루다’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명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건을 이용하고, 이 중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루다 운영에 이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용한 대화문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동의 받은 범위 등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를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8 판결에서 수집 목적 내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자 의사와 합치되는지 여부, 이용자의 예상가능성, 이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피심인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텍스트챗’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를 수집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기존 서비스와 전혀 다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이용자가 로그인하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정보주체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처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루다' 개발·운영과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텍스트앳'이나 '연애의 과학' 앱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다'라는 서비스 성격, 기반 플랫폼, 이용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른 페이스북 기반의 챗봇의 개발·운영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이용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이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 개발·운영에 이용한 것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공동의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처리되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용자 의사와의 합치성, 이용자의 예상가능성, 이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기재한 것만으로 '이루다' 개발·운영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심인이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불이익,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 허용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하려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등의 당초 수집 목적과

‘이루다’ 개발·운영은 서비스 성격, 기반 플랫폼, 이용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성질이나 경향 등 연관성이 부족하여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을 명시한 것 외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루다 학습과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다)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본 건 학습 DB에 저장된 정보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회원번호’가 일방향 암호화되었으므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응답 DB에 저장된 정보는 익명정보나 가명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개발을 위한 학습 및 서비스 운영에 가명정보나 익명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 8. 5부터 시행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8호),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22쪽 참조). 그



러나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명 정보'이고, '가명정보'는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므로(「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개인정보처리자가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본 건에서, '이루다' 개발에 이용된 학습 DB의 경우, 일부 회원정보가 제외되고 회원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된 채 성별·나이·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문장만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심인은 카카오톡 대화문장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본 건에서 피심인이 이용한 약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이에 대하여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는 노력이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8조의2에 규정된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루다' 서비스 운영에 이용된 응답 DB의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이름, 주소, 숫자, 영문자 등을 제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가명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하고 응답 DB에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일반 이용자에게 그대로 발화되도록 서비스하는 행위는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규정된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라) 소결

본 사안의 경우, 동의 받은 수집 목적 내의 개인정보 처리라고 할 수 없고,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이루다’ 개발·운영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화문장을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로 처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DB에 저장된 약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과 응답 DB에 저장된 약 1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은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2020. 2. 18. ~ 2021. 1. 12. ‘이루다’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 이용자                    명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건을 이용하고, 이 중                    건의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루다’ 서비스 운영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4. Github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유한 행위

###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2019. 10. 19. Github 공개 저장소에 연구성과 공유 목적으로 모델과 함께 100건(1,431건의 대화문장)의 카카오톡 대화(이하 ‘본 건 Github 대화’라고 한다)를 게시함으로써 2021. 1. 13. 이를 비공개 처리하기 전까지 Github 사이트에 접속한 누구나 본 건 Github 대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 가)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해당성

피심인은 본 건 Github 대화에 포함된 이름 11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지명정보도 개인의 주소지가 아니며, 대화 발화자의 정보도 성별 및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friend, lover 중 하나), 직업(student, collegian, civilian 중 하나)에 불과하고, 위 정보를 종합하여 하나의 대화파일로 보아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므로 이들 각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 Github 대화는 1개 파일로, 파일 내에 100건의 각 대화를 구분하는 session id와 발화자의 정보(성별, 관계, 직업)가 기재되어 있으며, 각 대화단위 별로 일련의 연속된 대화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를 종합하여 각 대화를 하나의 대화파일로 보고 해당 대화에 포함된 이름, 지명정보, 대화 발화자의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정보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본 건 Github 대화는 피심인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 DB에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회원 정보 등 합법적으로 입수 가능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대화 발화자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제공받는 자도 불특정 다수이므로 그 중 누군가는 이름, 성별, 지역, 기타 대화내용을 통해 대화 당사자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본 건 Github 대화는 성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이름 11건, 구나 동 단위의 지명정보 32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friend, lover 중 하나), 직업(student, collegian, civilian 중 하나)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고, 이 밖에 대화에 포함된 나머지 정보는 이름이 <NAME>으로, 숫자는 <NUM>으로 치환되어 있으며, 한 대화 당 평균 14문장 정도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것으로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가명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나) Github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유한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본 건 Github 대화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이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생성, 이용, 제공하는 등의 처리를 허용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공’에 관하여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한하는 취지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나 입수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외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명칭, 종류, 형태나 내용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고려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여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가명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 중 누군가는 공개하는 정보에 포함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건에서 피심인이 이름 11건, 지명정보 32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friend, lover 중 하나), 직업(student, collegian, civilian 중 하나) 정보가 포함된 본 건 Github 대화를 Github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 누구나 접근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IV. 처분 및 결정

#####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연애의 과학’ 앱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이루다’ 개발 및 운영에 이용된 카카오톡 대화 정보 중 회원탈퇴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바. Github에서 공유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가.부터 사.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제4항 및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기준금액

### 1) 산정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에 따라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 2)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 ① '텍스트앳'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피심인이 '텍스트앳'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위반행위는 '텍스트앳' 운영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텍스트앳'의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액인 [ ] 을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 ② '연애의 과학'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피심인이 '연애의 과학'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위반행위와 민감정보를 수집한 위반행위는 '연애의 과학' 운영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연애의 과학'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액인 [ ] 을 각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의 유무, 영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대한 고려 없이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카카오톡 대화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나 가명처리하려는 의도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나 동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반행위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 나)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보통 위반행위'로,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제3항 단서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3개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2개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는 고의·중과실이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이 중대성 판단기준 1개 또는 2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중대성 판단기준 2가지(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피해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5%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②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중대성 판단기준 중 2가지(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피해규모가 5%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③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개발·운영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한 행위  
중대성 판단기준 중 1가지(위반행위로 직접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 4)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을 1천분의 21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과 기준금액 〉

(단위 : 천원)

위반행위	관련 서비스	관련 매출액	기준금액(2.1%)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		
	이루다		
②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연애의 과학		
③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개발 및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한 행위	이루다		

6) ‘연애의 과학’ 이용자                      명 중 민감정보 수집 이용자 수는                      명으로 0.3%에 해당

## 다. 필수적 가중·감경

### 가) 필수적 가중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 별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이 '텍스트앳'(2013. 2. 1. ~ 2021. 4. 28.)과 '연애의 과학'(2016. 5. 9. ~ 2021. 4. 28.)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중하고, '이루다'(2020. 12. 22. ~ 2021. 1. 12.)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②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연애의 과학'에서 “내 애인의 섹스 판타지” 심리테스트를 통해 민감 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2년(2018. 8. 2. ~ 2021. 1. 26.)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③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개발·운영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한 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2020. 2. 1. ~ 2021. 1. 12.)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나) 필수적 감경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2항제1

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감경한다.

#### 라. 추가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 [별표]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II. 2.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각 감경한다.

####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아래와 같이 총 55,500천원으로 결정한다.

#### <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위반행위	관련 서비스	기준 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텍스트넷		⊕ (50%) ⊖ (50%)	⊖ (10%)	



	연애의 과학	⊕ (50%) ⊖ (50%)	⊖ (10%)	
	이루다	⊖ (50%)	⊖ (10%)	
②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연애의 과학	⊕ (50%) ⊖ (50%)	⊖ (10%)	
③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개발 및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용한 행위	이루다	⊖ (50%)	⊖ (10%)	
과징금 합계		55,500		

\* 최종 과징금 산출액 1억원 미만 :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 : 백만원 미만 절사

###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제6항,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 ① 회원탈퇴한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600만원, '연애의 과학'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6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②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600만원, '연애의 과학'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6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만원, '연애의 과학'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텍스트앳'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연애의 과학'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루다'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lt; 기준금액 산출내역 &gt;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관련 서비스	기준 금액
① 회원탈퇴한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600
	연애의 과학	600
②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600
	연애의 과학	600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200
	연애의 과학	200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텍스트앳	1,000
	연애의 과학	1,000
	이루다	1,0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의 ① 회원탈퇴한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②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행위,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의 각 위반기간이 3개월 이



상이므로 10%를 각 가중하고, ‘이루다’에서의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의 위반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10%), 소기업에 해당하는 점(10%)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하고,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행위,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하며, ‘이루다’에서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한다.

### < 가중·감경 내역 >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관련 서비스	기준 금액	가중⊕	감경⊖
① 회원탈퇴한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600	60(10%)	120(20%)
	연애의 과학	600	60(10%)	120(20%)

②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600	60(10%)	120(20%)
	연애의 과학	600	60(10%)	120(20%)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200	20(10%)	60(30%)
	연애의 과학	200	20(10%)	60(30%)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텍스트앳	1,000	100(10%)	300(30%)
	연애의 과학	1,000	100(10%)	300(30%)
	이루다	1,000	-	300(30%)

####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제6항,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가중·감경을 거쳐 아래와 같이 총 4,780만원으로 결정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관련 서비스	기준 금액	가중⊕	감경⊖	최종액
① 회원탈퇴한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600	60(10%)	120(20%)	540
	연애의 과학	600	60(10%)	120(20%)	540
②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600	60(10%)	120(20%)	540
	연애의 과학	600	60(10%)	120(20%)	540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지 않은 행위	텍스트앳	200	20(10%)	60(30%)	160
	연애의 과학	200	20(10%)	60(30%)	160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텍스트앳	1,000	100(10%)	300(30%)	800
	연애의 과학	1,000	100(10%)	300(30%)	800
	이루다	1,000	-	300(30%)	700
과태료 합계		<b>4,780</b>			

#### 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 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제75조제1항 각 호 위반행위(제3호), 제75조제2항 각 호 위반행위 2개 이상(제4호), 위반행위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제5호) 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자 수 10만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스캐터랩	법 제18조제1항	수집 목적 외 이용	2021.4.28.	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	개인정보 미파기	2021.4.28.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1,080만원
	법 제22조제1항	동의 방법 위반	2021.4.28.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320만원
	법 제22조제6항	아동 개인정보 법정대리인 미동의	2021.4.28.	과태료 부과 2,300만원
	법 제23조제1항	민감정보 처리 위반	2021.4.28.	시정조치명령
	법 제28조의2제2항	가명정보 제공 위반	2021.4.28.	시정조치명령
	법 제39조의6	유효기간제 위반	2021.4.28.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1,080만원

#### V.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제6항,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제2항,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제1항, 제75조(과태료)제1항·제2항·4항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 각각에 의한 과징금·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4월 28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부위원장 최영진 (서명)

위원 고성학 (서명)

위원 백대용 (서명)

위원 서종식 (서명)

위원 염홍열 (서명)

위원 이희정 (서명)

위원 지성우 (서명)

